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7,638,385	11,629,152
일반회계	370,520,698	11,115,621
특별회계	17,117,687	513,531
기타특별회계	17,117,687	513,5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38,915	79,16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645	19
의료급여특별회계	1,275,238	38,257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609,880	18,296
주택사업특별회계	113,904	3,417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063,767	61,913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4,266,125	127,984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263,000	7,890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817,712	84,531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3,068,501	92,05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65,08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